

December 19, 2024

미국 연방법원, 기업투명성법에 따른 신고 의무 일시 중단

I. 미국 기업투명성법 개관

미국 기업투명성법("CTA", The Corporate Transparency Act)¹은 국방수권법(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, "NDAA")의 일환으로 2021. 1. 1. 미국 의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. CTA는 자금세탁, 테러자금조달, 부패, 조세사기 및 유령회사 창설을 방지하고 퇴치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한 상당한 개혁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.

CTA의 주요 내용은 수익적 소유권 정보("BOI",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) 신고 체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. 이러한 체계는 미국 국내 및 국외를 불문하고 모두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(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, FinCEN)에 BOI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CTA에 따르면 수익적 소유자는 (1) 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'실질적 지배권'²을 행사하거나, (2) 신고대상회사 지분의 25%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개인으로 정의됩니다. BOI 신고서는 수익적 소유자명, 생년월일 및 거주지 주소, 신분증명서류의 고유 식별번호 등의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. BOI 신고서는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,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를 하거나 수정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¹ 31 U.S.C. § 5336

² 특정 개인은 하기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됨: (i) 고위 임원: 사장, 최고재무책임자, 법률고문(GC), 최고경영책임자, 최고운영책임자 또는 기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임원직을 맡고 있는 자, (ii) 임명 또는 해임 권한: 개인이 고위 임원 또는 이사회 과반수를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, (iii) 중요 의사결정권자: 개인이 사업의 성격, 범위 및 속성, 주요 지출, 투자 및 중요한 계약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여 회사가 내리는 중요한 결정을 지시, 결정하거나, 그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및 (iv) 포괄적 기준: 신고대상회사에 대한 기타 형태의 실질적 지배권.

II. 사례 개요: TEXAS TOP COP SHOP v. GARLAND ET AL.

2024. 12. 3. *Texas Top Cop Shop, Inc., et al. v. Garland, et al.*³ 사건에서 미국 연방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은 CTA 가 “위헌소지가 있다”고 판단하여 행정절차 제 705 조에 따라 CTA 집행을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고 해당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.

Texas Top Cop Shop, Inc. (총기류 및 전술장비 소매업체), 미국자영업연합(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es, “NFIB”) 등이 주도하는 원고들은 CTA 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. 이들은 CTA 가 미국 헌법의 상거래 조항과 필요성 적절성조항(Necessary and Proper Clause)에 따라 미국 의회가 부여받은 권한을 초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. 원고들은 또한 CTA 가 (i) 제 9 차 및 제 10 차 수정안(Amendment)에 따른 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, (ii) 제 1 차 수정안에 규정된 결사의 권리에 위배되며, (iii) 구체적인 혐의나 사법적 감독 없이 사적 정보의 공개를 요구함으로써 제 4 차 수정안을 위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.

Amos L. Mazzant 판사는 위 어느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, 원고들이 임시 금지명령을 받기 위한 모든 전제조건은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원고들 중 하나인 NFIB 가 전국적으로 회원들을 대표하고 있어 지방법원은 전국적인 금지명령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

이 판결은 CTA 에 규정된 FinCEN 에 대한 신고마감시한인 2025. 1. 1.을 몇 주 앞 둔 상황에서 내려졌습니다.

III. 영향

2024. 12. 5. 법무부는 위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통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.

또한, FinCEN 은 같은 날 “효력이 유지되는 한.....명령을 준수할 것”이라는 발표하는 공지를 게시하였습니다.

그렇다면, 신고대상회사는 현재 BOI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, 임시 금지명령이 유효한 동안에는 미제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이 금지명령은 2024. 1. 1. 이전에 설립된 법인이 2025. 1. 1.까지 신고할 의무 뿐 아니라 다른 CTA 제출의무기한에도 적용됩니다. 그러나, FinCEN 은 자발적으로 신고대상회사들의 BOI 신고서를 계속 접수할 것입니다.

³ Texas Top Cop Shop, Inc. v. Garland, C.A. No. 4:24-CV-478, 2024 U.S. Dist. LEXIS 218294 (E.D. Tex. 2024. 12. 3.).

IV. 시사점

미국 정부는 위 예비 금지명령의 취소를 요청하고 있으며, 미국 항소법원들이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있어 궁극적으로 미국 대법원까지 다툼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신임 트럼프 행정부가 CTA 를 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. 2021 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NDAA(CTA 포함)의 통과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미국 하원과 상원 각 2/3 의 찬성으로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NDAA 와 CTA 를 법률로 제정했습니다.

이러한 경위를 비추어 볼 때, 다수의 기업들은 (1) CTA 의 준수를 위해 상당한 시간, 노력 및 법률 비용을 사용할 것인지, 또는 (2) BOI 신고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리스크(위 예비 금지명령이 해제 또는 변경되는 등으로 CTA 가 궁극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를 의미함)를 부담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. 각 기업들은 위 사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화하는 법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.

관련 구성원

안현철

변호사

T 02.3404.6541

E hyunchul.an@bkl.co.kr

황유진

외국변호사(New York)

T 02.3404.0289

E eugene.hwang@bkl.co.kr

본 Legal Update는 권재현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였습니다.

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, 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